HAUSTORY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부천대장지구 A2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년 11월 12일(목)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주택 (공공분양)	경기도 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1.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5.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3년	적용	공공택지 (공공주택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공통 유의사항

■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대장지구 A2블록)는 분양 상담 전화(☎032-322-0548)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자산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공 고	접 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일 정	2026.11.12.(목)	2026.11.23.(월)	2026.11.24.(화)	2026.11.25.(수)	2026.12.01.(화)	2026.12.04.(금) ~ 2026.12.11.(금)	2027.01.25.(월) ~ 2027.01.29.(금)
장 소	·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견본주택(10:00~14:00)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09:00 ~ 17:30)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검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09:00 ~ 17:30)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검색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견본주택 (10:00 ~ 17:00)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A2블록 일원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지하 2층 ~ 지상 15층, 8개동 전용면적 85m² 이하 548세대(특별공급 466세대, 일반공급 82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택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m²) 공급면적 주거 전용	공급면적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계)	세대별 대지 지분(m²)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혼 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특별공급 기관 추천	특별공급 지역균형 발전	특별공급 소계	일반 공급	최하층 배정 세대수
2026000457	합계									548	55	55	82	27	110	27	55	55	466	82	41
	01	059.7100A	59A	59.7100	21.3869	7.2850	41.1981	129.5800	44.2178	242	24	24	36	12	49	12	24	24	205	37	17
	02	059.9900B	59B	59.9900	21.4872	7.3192	41.3913	130.1877	44.4251	126	13	13	19	6	25	6	13	13	108	18	9
	03	059.9900C	59C	59.9900	21.4872	7.3192	41.3913	130.1877	44.4251	14	1	1	2	1	3	1	1	1	11	3	1
	04	074.9800A	74A	74.9800	26.8563	9.1481	51.7340	162.7184	55.5259	50	5	5	8	2	10	2	5	5	42	8	6
	05	084.9500A	84A	84.9500	30.4274	10.3645	58.6130	184.3549	62.9091	116	12	12	17	6	23	6	12	12	100	16	8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모형, 팸플렛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약식 표기	층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60%) 1차(10%) (2027.03.24.)	2차(10%) (2027.08.18.)	3차(10%) (2028.01.19.)	4차(10%) (2028.06.21.)	5차(10%) (2028.11.22.)	6차(10%) (2029.04.18.)	잔금(30%) 입주시 (주택도시기금 제외금액)	주택도시기금
059.7100A	59A	1층	8	576,640,000	57,664,000	57,664,000	57,664,000	57,664,000	57,664,000	57,664,000	57,664,000	117,992,000	55,000,000
		2층	17	582,770,000	58,277,000	58,277,000	58,277,000	58,277,000	58,277,000	58,277,000	58,277,000	119,831,000	55,000,000
		3층	17	595,040,000	59,504,000	59,504,000	59,504,000	59,504,000	59,504,000	59,504,000	59,504,000	123,512,000	55,000,000
		4층	17	607,310,000	60,731,000	60,731,000	60,731,000	60,731,000	60,731,000	60,731,000	60,731,000	127,193,000	55,000,000
		5층이상	183	613,450,000	61,345,000	61,345,000	61,345,000	61,345,000	61,345,000	61,345,000	61,345,000	129,035,000	55,000,000
059.9900B	59B	1층	1	578,280,000	57,828,000	57,828,000	57,828,000	57,828,000	57,828,000	57,828,000	57,828,000	118,484,000	55,000,000
		2층	8	584,440,000	58,444,000	58,444,000	58,444,000	58,444,000	58,444,000	58,444,000	58,444,000	120,332,000	55,000,000
		3층	9	596,740,000	59,674,000	59,674,000	59,674,000	59,674,000	59,674,000	59,674,000	59,674,000	124,022,000	55,000,000
		4층	9	609,040,000	60,904,000	60,904,000	60,904,000	60,904,000	60,904,000	60,904,000	60,904,000	127,712,000	55,000,000
		5층이상	99	615,20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129,560,000	55,000,000
059.9900C	59C	2층	1	584,390,000	58,439,000	58,439,000	58,439,000	58,439,000	58,439,000	58,439,000	58,439,000	120,317,000	55,000,000
		3층	1	596,690,000	59,669,000	59,669,000	59,669,000	59,669,000	59,669,000	59,669,000	59,669,000	124,007,000	55,000,000
		4층	1	608,990,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127,697,000	55,000,000
		5층이상	11	615,150,000	61,515,000	61,515,000	61,515,000	61,515,000	61,515,000	61,515,000	61,515,000	129,545,000	55,000,000
074.9800A	74A	2층	4	716,510,000	71,651,000	71,651,000	71,651,000	71,651,000	71,651,000	71,651,000	71,651,000	139,953,000	75,000,000
		3층	6	731,600,000	73,160,000	73,160,000	73,160,000	73,160,000	73,160,000	73,160,000	73,160,000	144,480,000	75,000,000
		4층	6	746,680,000	74,668,000	74,668,000	74,668,000	74,668,000	74,668,000	74,668,000	74,668,000	149,004,000	75,000,000
		5층이상	34	754,230,000	75,423,000	75,423,000	75,423,000	75,423,000	75,423,000	75,423,000	75,423,000	151,269,000	75,000,000
084.9500A	84A	1층	4	802,810,000	80,281,000	80,281,000	80,281,000	80,281,000	80,281,000	80,281,000	80,281,000	165,843,000	75,000,000
		2층	8	811,350,000	81,135,000	81,135,000	81,135,000	81,135,000	81,135,000	81,135,000	81,135,000	168,405,000	75,000,000
		3층	8	828,430,000	82,843,000	82,843,000	82,843,000	82,843,000	82,843,000	82,843,000	82,843,000	173,529,000	75,000,000
		4층	8	845,510,000	84,551,000	84,551,000	84,551,000	84,551,000	84,551,000	84,551,000	84,551,000	178,653,000	75,000,000
		5층이상	88	854,060,000	85,406,000	85,406,000	85,406,000	85,406,000	85,406,000	85,406,000	85,406,000	181,218,000	75,000,000

3 신청자격

1. 공통사항

■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부천대장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1.12.)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	30%	· 공고일 현재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5.11.12.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 거주 ('25.11.12.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6.05.12.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6.05.12.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기관추천·국가유공자·지역균형발전특별공급, 일반공급 74A, 84A 제외)

※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 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및 임신 관련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공급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요 없음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6.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7.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11.12.~2026.11.12.)이거나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8.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9.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②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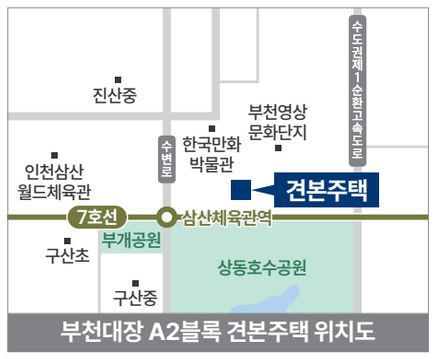
③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4 기타 안내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천대장지구 A-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129-82-10595) 남광토건(120-81-01995) 중흥토건(416-81-13368) 케이알산업(126-81-05325) 극동건설(201-81-45083) 씨앤씨종합건설(123-81-56539)	남광토건(120-81-01995) 중흥토건(416-81-13368) 케이알산업(126-81-05325) 극동건설(201-81-45083) 씨앤씨종합건설(123-81-5653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유탑엔지니어링 (주)건일엠이씨 (주)이지건축



부천대장 A2블록 견본주택 위치도

■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견본주택 위치안내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견본주택)

※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주차요금이 발생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 운영기간 : 견본주택 관람기간 및 현장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현장 계약체결기간

※ 운영기간 내 주말, 공휴일 방문 가능

※ 운영기간 변동 시 홈페이지 개별 안내예정

■ 운영시간 : 10:00~17:00

■ 대표번호 : 032-322-0548

■ 홈페이지 : www.부천대장하우스토리디센트.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축약)에 기재되지 않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 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